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418호

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「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110호, 2022.3.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 1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(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

(단위 : 천원/m²)

항 목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	지하층건축비 (지하층면적기준)
직접공사비	<u>1,191</u>	<u>634</u>
간접공사비	<u>494</u>	<u>260</u>
설계비	<u>41</u>	
감리비	<u>16</u>	
부대비	<u>115</u>	

주1) 지상층건축비는 16~25층 이하, 주거전용면적 60㎡초과~85㎡이하를 기준으로 함.

주2)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.

- 직접공사비 = [해당 지상층건축비 - (설계감리비 및 부대비)] × 70.7%
- 간접공사비 = [해당 지상층건축비 - (설계감리비 및 부대비)] × 29.3%